

91.10.24 거래처와 잦은 술자리 과로死亡

“업무상재해 순직” 판결

구城西洞(가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박씨의 죽음은 업무상재해에 해당 하는 순직으로 봐야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라도 업무상 과로가 원인 이 된 이상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씨는 거래처 사람들과 거의 매일 술자리를 벌여온 남편 박씨가 지난 89년10월25일 저녁을 먹고 2차로 술대접을 하기 위해 자리를 옮기던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위장출혈등으로 6일만에 숨지자 노동부를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金容俊대법관)는 24일 거래처 사람들과 업무상 잦은 술자리를 벌이다가 과로로 숨진(주)동양화학공업영업담당차장 朴炳根씨의 부인 曹明淑씨(35·서울麻浦